

『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
-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농업인의 정의 변경(안 제2조)
 - 현행 :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 - 개정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- 「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」 시행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가격 기준 변경(안 제3조)
 - 현행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

- 개정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목록집의
 용자지원 한도액
- 농업기계 구입 지원 제외 대상 및 기간의 명확화(안 제3조)
 - 현행 : 타 법령이나 조례, 지침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
 농업인
 - 개정 :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농업기계 보조금을
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
-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, 구성, 임기, 직무
 등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7조 ~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,
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,
 「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
- 상위법령인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농업기계 구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